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구 등을 현행화함(제3조, 제4조 및 제6조)

나.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고 실제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도 높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치료보호 절차 등에서 ‘입원’만을 전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원

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제9조 제2항)

라. 치료보호 퇴원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관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관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현행화 함(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40조제4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으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각 위원회의 기능)”을“(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한다.

4.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치료보호”로 한다.

2.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정신보건업무”를 각각 “정신건강증진 업무”로 한다.

제9조의 제목“(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을“(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뢰”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의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그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으로,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을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원 의뢰·통보 및 입원 신청”을 “의뢰·통보 및 신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치료보호)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

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중독자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전에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⑤ 제2항의 심의에서 해당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비용을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다”를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것”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고 입원 조치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입원을”을 “치료보호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보고를”을 “제1항의 보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치료보호기간”을 “총 치료보호기간”으로,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제10조제2항의 심의”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을 “치료보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를 “제10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을 “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치료 보호한 경우에는”으로, “입원을 의뢰한 검사”를 “해당 검사”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퇴원 조치)”를 “(치료보호의 종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퇴원 조치를 하여야”를 “치료보호를 종료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을”을 “치료보호의 종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부터”를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로, “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보호기관에서”를 “치료보호기관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중독자등의 이름	중독자등의 성별	중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중독자등의 주소·거소					
사용·중독 마약류					
심의 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심의·의결 사항					
출석 위원			서명		

마약류중독자 등 ☐ 치료보호 의뢰 · 통보
 ☐ 치료보호 신청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주소·거소

학력	직업
----	----

사용·중독 마약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를 의뢰·통보 [] 신청 []합니다.

의
의
의

의뢰인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마약류중독자 등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치료보호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

    graph LR
      A[의뢰·통보·신청] --> B[접수]
      B --> C[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
      C --> D[결재]
      D --> E[통보]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입원 보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입원 일시

입원 장소

입원 사유

비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입원 일시·장소 및 사유를 알린다.

이
의
의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주소·거소

사용·중독 마약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2조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검사 귀하

첨부서류	진단서 사본 및 소견서 사본 각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치료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주소·거소

사용·중독 마약류

기존 치료보호기간

연장 요청 치료보호기간

연장 요청 사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치료 상태 보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치료 시작 일시

치료 기간

치료 상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의 치료 상태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치료보호기관의 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충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생략)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u>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다음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3조(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 -----
제5조(각 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	제5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마약류중독자의 입원·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마약류중독자의 입원·퇴원과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의 기능) ① -----
-----.

1. 치료보호-----

2. 3. (현행과 같음)

4.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5. ----- 치료보호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치료보호의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입·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

3. ----- 치료보호 -----

제6조(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3. (생략)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 ⑦ (생략)

제9조(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

③ -----

-----.

1. ----- 정신건강증진 업무 -----

2. 3. (현행과 같음)

④ ----- 정신건강증진 업무-----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의뢰 등) ① -----

-----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 및 판별검

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들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의뢰·통보 및 입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중독자등의 입원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사를 의뢰----- ----- ----- ----- ② ----- ----- ----- ----- ---- 알리고, 그 중독자들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 ----- ----- ----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 ----- ④ ----- ----- 의뢰·통보 및 신청 ----- ----- ----- 제10조(치료보호)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을 받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입원 의뢰·통보 또는 입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들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들을 입원시키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독자들을 입원시킨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들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하고,	으면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중독자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전에 심의를 거칠 수 없
---	---	--	---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원을 신청한 경우: 입원을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1.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경우: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⑤ 제2항의 심의에서 해당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비용을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한다.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려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 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생 략)	제12조(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u>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 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원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u>	② <u>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의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 과를 알려야 한다.</u>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2개월 이상의 치 료보호가 필요한 중증 마약류중 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요 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마약류중독자를 제3조제1항 에 따른 <u>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 다.</u>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u>아 니할</u> 수 있다.	제15조(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보호 특례) ① ----- ----- ----- ----- ----- <u>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 보호할 수 있다.</u> ----- ----- ----- <u>않 을</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	② -----

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 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 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 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 이 적절하지 <u>아니하다고</u> 판단되 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 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 3조제2항에 따른 <u>치료보호기관 에 입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방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u>아니하고</u> 입원 조치 할 수 있다.	----- ----- ----- ----- ----- <u>않다고</u> ----- ----- ----- ----- <u>치료보호기관 에서 치료보호할 것</u> ----- -----. ----- ----- ----- <u>않을 수 있다.</u>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 독자가 제13조에 따른 치료보호 기간을 넘어 입원을 계속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u>보고하여야</u> 한다.	제16조(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 ----- ----- ----- <u>치료보호를</u> ----- ----- ----- ----- ----- ----- ----- <u>보고해야</u> -----.
② <u>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u>	② <u>제1항의 보고를</u>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 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 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 다.	----- ----- ----- ----- ----- ----- -----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u>총치료보 호기간</u> 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 자들을 <u>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 킨</u> 기간을 포함한다.	③ ----- <u>총 치료보 호기간</u> ----- ----- <u>제10조제2항의 심의</u> ----- ----- ----- <u>치료보호한</u> ----- ----- -----
④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 ----- ----- <u>제10조제4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람</u> ----- ----- -----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생 략)	제17조(치료 상태 보고) ① (현행 과 같음)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 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 킨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 간이 끝나기 10일 이전에 입원 을 의뢰한 검사에게도 치료 상	② ----- <u>제9조 제1항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 한 경우에는</u> ----- ----- ----- <u>해당 검사</u> -----

태를 알려야 한다.	-----.
제18조(퇴원 조치) 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 호기관의 장은 <u>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지체 없이 <u>퇴원 조치를 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 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그 사실을 <u>보고하여야</u>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 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u>치료보호의 종료</u>) ① ---- ----- ----- <u>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u> ----- ----- ----- <u>치료보호를 종료해야</u> ----- ----- ----- <u>보고해야</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가 퇴원을 요청한 경우	4. ---- <u>치료보호의 종료를</u>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퇴 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 부터 1년 동안 <u>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보호기관에서</u> 매월 마약 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u>치 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 일부터</u> ----- <u>치료보호기 관에서</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3872, 3876